

문서번호	공기업담당관-8578	실무사무관	공사공단팀장	공기업담당관	재정기획관	기획조정실장
결재일자	2016.7.27.					
공개여부	비공개(5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협 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사담당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무과장</p>				
방침번호						

“적어도 서울시 산하기관에는 ‘위험의 외주화’ 는 없습니다.”

투자 · 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

2016. 7.

기 획 조 정 실
[공기업담당관]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가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배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목 차

I	추진배경	1
II	안전 외주화 실태조사	3
III	비전 및 목표	5
IV	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세부추진계획	6
	① 안전분야 외주사업 관리강화	7
	②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근절	13
	③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	17
	※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노동차별 해소	22
V	행정사항	23

“적어도 서울시 산하기관에는 ‘위험의 외주화’ 는 없습니다.”
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

시민과 근로자의 안전·생명과 관련된 투·출기관의 외주사업 실태를 점검하였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분야 외주화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I 추진 배경

-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‘비용’과 ‘효율성’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확산
- 구의역 사고 등 반복되는 공공부문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써 안전업무 외주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
 -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주사업에 안전의 위험성 전가
- 전적자 특혜, 불공정한 계약은 안전분야 외주사업의 위험성과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
 -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로 비용이 사업비에 전가됨에 따라 불공정 계약과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 조건 등에 악영향 초래

- ◆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재발 방지
- ◆ 투·출기관의 안전업무에 대한 기관의 책임의식 제고

작성 자 공기업담당관 : 박진영☎2133-6770 공사공단팀장 : 이정미☎6776 담당 : 송미정☎6777

□ 시민안전혁신대책 시장 발표

구 분	발표시기	발표 내용
사고발생	5.28(토)	▶ 구의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직원 사망
대시민 사과 수습방향	6. 7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시민 사과 ▶ 진상규명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 ▶ 외주화에 대해 직영 방안 단계적 추진 (은성, 유진) ▶ 전관채용, 전적자 문제 해결 ▶ 스크린도어 전수조사 등 지하철 안전 시스템 획기적 혁신 ▶ 안전 불감증 개혁 : 특권관행, 불평등-불공정 개선, 비정규직-하도급 등
지하철 안전 직영화	6.16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PSD 등 메트로 5개 분야, 도철ENG 2개 분야 직영 전환 - 은성PSD 위탁기간 만료 후 전자관리소 직원투입 등 긴급조치 ▶ 특혜시비 유진메트로컴 전면 재구조화(시설직접관리, 수익률 ↓) ▶ 메트로 퇴직자 위한 특혜조항 전면 폐지, 재직 중인 전적자 퇴출
산하기관 실태조사 부당계약 근절	6.30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발표 추진상황 및 후속조치 계획 ▶ 레이저센터 전면도입을 통한 'PSD 안전사고' 원천 차단 ▶ 산하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철폐(3건) 및 갑을관계 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설관리공단 VMS(도로전광표지판 정비), ② 서울의료원 환자 이송, ③ 위레터널 관리 ▶ 노동차별 철폐를 위한 추진계획(사람중심, 노동존중의 서울)

※ 시민안전혁신대책 지속적으로 발표 준비 중(~9월)

II

안전 외주화 실태조사

□ 실태조사 개요

- 대상기관 : 투자·출연기관 19개 기관 (서울메트로, 도시철도공사 제외)
 - 공사·공단 (3) : 시설관리공단, 농수산식품공사, SH 공사
 - 출자·출연(16) : 서울의료원, 서울연구원, 서울산업진흥원, 서울신용보증재단, 세종문화회관, 여성가족재단, 서울복지재단, 서울문화재단, 서울시립교향악단, 자원봉사센터, 디자인재단, 장학재단, 평생교육진흥원, 50+재단, 디지털재단, 서울관광마케팅(주)
- 점검시기 : '16. 6. 16. ~ 6. 29.
- 중점 점검사항 ➡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에 역점
 - ① 위험의 외주 여부 : 시민 또는 근로자 위험을 외주에 전가 하는지 여부
→ 직영 가능성 검토 후 즉시 직영, 중장기 직영검토 등 대책 강구
 - ② 전적자 특혜 여부 : 전적시 특혜성 근로조건 및 계약 등
→ 특혜소지 계약 등 적출시 계약 해지 등 개선방안 강구

□ 실태조사 결과 ('16.6.30.)

① 위험의 외주화 실태

- 현재 외주 중인 안전분야 사업 중 일제점검 결과, 외주사업은 총 19개 기관 1,942건으로써, '안전분야 외주용역 사업'은 총 13개 기관 778건

- ▶ 안전분야 : 작업환경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·생명과 직결된 사업
 -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, 자동차전용도로 등 외부적인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, 추락·감전위험 등 작업자체가 위험한 사업 등
- ▶ 비안전분야 : 학술용역, 프린터 점검 등 통상적인 의미에서 위험성이 낮은 사업

○ 778건 중 안전 위험요인이 높은 사업은 총 74건

기관	13개	S 공사	H 시 설 공 단	농수산 공 사	서 울 의료원	서 울 연구원	SBA	신 용 보 증	세 종 회 관	여 성 재 단	복 지 재 단	문 화 재 단	교 향 약 단	디자인 재 단
안전외주	778건	615	55	15	11	2	6	3	15	2	2	39	3	10
고위험	74건	1	30	3	8	1	1	2	9	2	2	14		1

※ 총 21개 산하기관 중 8개 기관 제외

- 지하철 양공사 : 서울메트로, 도시철도공사 (도시교통본부 별도 추진)
- 안전관련 외주사업 없는 6개 기관 : 자원봉사센터, 장학재단, 평생교육진흥원, 디지털재단, 관광마케팅, 50+재단

→ **시민·근로자의 생명·안전과 관련되고, 위험 작업 빈도가 높은
안전분야 외주사업 직영화(전용도로 VMS 정비·보수업무, 환자 이송업무)**

② 전적자 발생 배경 및 실태

- 전적자 현황 : **(당 초) 2개 기관 210명 → (현 재) 1개 기관 19명**
- 당초 2개기관에서 210명의 전적자가 발생하였으나, 자연퇴직·재고용 등으로 인해 **현재 1개 기관(농수산식품공사)에서 19명 근무 중**

기관	회사형태	최초 전적자 (2008)	현재 전적자 (2016)
농수산식품공사	(민간위탁) → (일반 업체) → (자회사)	64명	19명
SH공사	(민간위탁) → 민간위탁 수의계약 종료	146명	없음

※ 지하철 양공사(서울메트로, 도시철도공사) 제외

- 발생 배경 : '08년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주 추진
- 농수산식품공사 : '08년 이후 계속된 고용승계로 19명 재직중 특혜 미부여
 - '08년 시장관리업무 민간위탁시 전적자(64명, AtoZ) 발생
 - '11년 AtoZ과 수의계약을 종료 → 특혜 소멸
 - '13.12 농수산관리(주) 설립시 고용승계
- SH공사 : 현재 전적자 없음
 - '08년 아파트관리업무 민간위탁시 전적자 발생(146명, SHTM) 발생
 - '10년 SHTM과 연장계약시 특혜조항 삭제
 - '13년까지 SH에서 126명 직고용(20명 미희망)

→ **자연퇴직·재고용 및 특혜조건 삭제로 전적자 문제 해소됨.
향후 전적자 부당 특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**

III

비전 및 목표

비 전

사람이 중심인 서울,
안전한 도시 서울

목 표

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

정책목표

안전분야
외주사업
관리강화

+

전 적 자
부 당 한
특혜근절

+

계약분야
갑을관계
혁신

+

비정규직
정규직화
노동차별해소

핵심과제

선정 절차 강화 외주사업 직영화

- ▶ 이사회 의결절차 강화 및 결재권자 상향
- ▶ 안전분야 외주사업 직영화

전적자 특혜 관련 행동강령 제·개정

- ▶ 퇴직자 재취업 제한
- ▶ 특혜성 근로조건 금지
- ▶ 특혜성 수의계약 금지
- ▶ 조건부 계약 금지

부당계약 금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

- ▶ 부당계약서 시정 및 10대 금지 조항 준수
- ▶ 부당계약 상시 감시체계 구축

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차별 해소

- ▶ 비정규직 정규직화 (검침원, 청소원 등)
- ▶ 정규직 전환자 차별 해소

추진전략

- 투자·출연기관 외주사업의 구의역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제도화
- 경영효율화 등 측면에서 추진·운영하던 외주사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, ‘사람중심, 노동존중’으로 업무수행방법 혁신

IV

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세부추진계획

<p>분 야</p>	<p>3개 분야, 6대 핵심과제, 13개 세부실행과제</p>
<p>안전분야 외주사업 관리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과제1. 외주사업 의사결정 절차 강화 (투·출기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-1. 안전분야 외주사업 이사회 의결 의무화 1-2. 비안전분야 외주사업 결재권자 상향 조정 ■ 과제2. 안전분야 외주사업 직영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-1. 전용도로 VMS 정비·보수 사업 (시설관리공단) 2-2. 환자 이송 사업 (서울의료원) ■ 과제3. 안전분야 직영업무 지원강화 (시 주관부서, 투·출기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-1. 안전·생명 분야에 대한 예산 등 지원 강화 ■ 과제4. 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 상향 (공기업담당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-1.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배점 상향을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
<p>전 적 자 부 당 한 특혜근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과제5. 부당한 전직자 발생 원칙적으로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-1.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제한 및 계약업체 특혜방지에 관한 표준안 작성 (공기업담당관) 5-2. 각 기관의 행동강령 제·개정 (투·출기관)
<p>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과제6.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-1. 부당한 계약조건 즉시 시정 조치(재무과, 투·출기관) 6-2. 부당(갑질)계약 조건 10개 항목 사용 금지 및 처벌 명문화 (재무과, 투·출기관) 6-3. 부당계약 상시 감시 체계 구축(재무과) 6-4. 「원순씨 핫라인」 부당행위 신고 창구 운영(감사담당관) 6-5. 안전 관련 용역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(재무과, 투·출기관)

1

안전분야 외주사업 관리 강화

투자·출연기관의 안전분야의 신규 외주사업의 의사결정 절차를 제도화하고, 직영화를 통해 안전 관리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

과제 1

외주사업 의사결정 절차 강화 (투·출기관)

현 황

- 이사회 부의사항은 중요한 재산의 취득·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외주사업의 신규·재계약 여부 결정은 대부분 내부결재로 의사결정

문 제 점

-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이,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외주를 추진

추진방향

- 원칙적으로 안전분야 사업의 신규 외주를 중단하며, 기존의 외주사업도 점검을 거쳐 직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직영으로 전환
- 중요 안전분야 사업을 부득이하게 신규 외주할 경우 기관의 책임성 강화
 - 이사회 의결 : 신규 외주, 안전요인 내재업무 재계약 이사회 의결 의무화
 - 결재권 상향 : 외주여부 결정 결재권자 한 단계씩 상향, 신중 결정 지원
 - 사전협의 이행 : 市 위탁사업 재위탁 등의 경우, 市 위탁부서 협의

□ 추진계획 : '16. 8월까지, 투·출기관

① 「안전분야 사업」을 외주화하는 경우, 「이사회 의결」을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, 市の 모니터링 기능 강화

-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, 의사록이 보존되는 「이사회」에 「안전분야 외주화 사항」 부의를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 제고
- 이사회 안건은 市 주관부서 및 공기업담당관 등으로 송부하게 되어 있고, 市 실·국·본부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므로 市的 모니터링 기능 강화
- 「이사회 운영 규정」과 「연초 이사회 운영계획」에 「안전분야 사업」의 외주화에 대해 「이사회 의결사항」으로 반영하도록 명문화

《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》

제00조(부의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

- 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...(중략)...

00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

② 「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닌 외주사업」 관련 결재권자를 한 단계씩 상향하여 신중한 결정 유도

- 「사무위임전결규정 시행내규」를 개정하여 외주사업 계약체결 관련 전결권자를 한 단계씩 상향

－ 신규계약 전결 : 본부장 → 기관장 / 갱신계약 전결 : 처장 → 본부장

【 기존 】

전 결 사 항	기관장	전 결 권 자	
		본부장	처장
2. 공사감독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가. 신규계약 체결 나. 갱신계약 체결		○	○



【 변경 】

기관장	전 결 권 자	
	본부장	처장
○	○	



안전분야 외주사업 현황

- 투자·출연기관의 **안전분야 외주용역 사업은 총 778건이며**, 그 중 안전 위험요인이 있는 사업은 **총 74건**
- 안전업무의 대부분은 고가장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나, 법적으로 외주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**직영대상 업무는 2건으로 선정**

 외주화의 문제점

- 외주업무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안전조치에 미흡하고 관리에 소홀해짐에 따라 시민 및 작업자의 안전·생명에 영향
- 업체 이윤창출을 위한 최저인원 운용 및 저임금책정으로 인해,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숙련된 인력 유출과 정비기술 및 노하우 축적·전수 미흡

 직영전환 추진방향

- 시민·근로자의 **생명·안전과 관련이 있고, 위험 작업 빈도가 높은 업무 직영화**
 - 기존 계약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영 전환
 - 직영전환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소요예산을 2017년 예산편성시 반영
- **안전분야 외주사업의 직영전환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**
 - 시설·도로 관리 업무 등 현재 외주중인 사업이나 신규 사업 중 직영 전환 대상사업 지속적으로 발굴

□ 외주사업 직영 전환 추진계획 : '17년 시행

〈 안전분야 외주사업의 직영 전환 기준 〉

- **위험성** : 시민·근로자의 안전·생명과 직결되고 위험한 작업환경의 업무
- **법적제약** : 법규상 외주화를 의무한 규정 사업이 아닌 업무
예시) 「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」에 의한 승강기 점검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 등은 법적으로 의무 외주 사항
- **고가장비/업무빈도** :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고 위험 작업 빈도가 높은 업무
예시) 계절성 사업인 가로정비사업, UPS설비 정기점검 사업 등

- ※ 예외 : 직영대상 사업이라도 다음의 불가피한 경우는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외주 추진
-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
 - 면허를 갖춘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외주가 사실상 법정되어 있는 업무
 - 시민·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있어 직영보다 외주가 더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업무
 -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외주를 통한 시급한 보수조치가 필요한 업무 등

① 전용도로 VMS(Variable Message Sign) 정비·보수 사업 (시설관리공단)

○ 외주개요

- 계약기간/계약금액 : '16.1.8~12.31 / 금액 114백만원
- 작업내용 : 도로전광표지(VMS) 53개소, 장애조치와 일상 및 정밀점검
- 작업빈도 : 연간 300건(장애조치 170, 점검 130건)
- 작업환경 : 6m 이상 높이에서 고소작업차량을 활용, 연 80회 작업

○ 직영시기 : '17. 1. 1. (기존 계약 종료시점)

○ 직영내용 : 도심권 및 주요도로 도로전광표지 정비공사

○ 소요 인력 및 예산

- 전문기술인력 : 4명 (자격 : VMS 업체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)
- 소요예산 : 연간 약 250백만원 (인건비 및 노후차량 교체)
 - 정보통신 전문기술인력(4명) = 200,000천원
 - 노후 정비차량 교체(2대) = 50,000천원

② 서울의료원 환자 이송 사업 (서울의료원)

○ 외주개요

- 계약기간/위탁기관 : '16.3.25~'17.3.24(1년) / (주)중앙응급환자이송단
- 계약금액 : 36,590천원(인건비, 복리후생비, 유류비, 차량유지 관리 등)
- 운영내용 : 긴급환자 이송 및 위험한 도로주행이 필요한 업무
 - 응급환자, 정신질환자, 알콜중독, 치매노인/요양병원 이송 등
- 운영빈도 : 환자발생 시 수시로 이송업무 수행 (24시간)
- 작업환경 : 메르스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 관리가 필요

○ 직영내용 : 긴급 환자 이송

○ 직영시기 : '17. 3. 25. (기존 계약 종료시점)

○ 소요 인력 및 예산

- 소요인력 : 10명 (3교대 근무 : 응급구조사 5명, 운전기사 5명)
- 소요예산 : 연간 455백만원
 - 응급구조사(5명) = 175,000천원
 - 운전기사(5명) = 150,000천원
 - 특수구급차 1대 추가 = 100,000천원
 - 차량유지비(2대) 등 = 30,000천원

※ 위례터널·장지지하차도 직영 전환(도로계획과)

- 서울시 관리 터널·지하차도 : 총 139개소(터널 35, 지하차도 104)
 - 직영 109개소, 시설관리공단 관리 29개소, 민간위탁 1개소(위례터널)
- 관리주체 구분(자동차전용도로 통합관리 추진계획, 2부시장방침, '14.4.17.)
 - 시 도로사업소 : 일반 시도상 시설
 - 시설관리공단 : 도시고속도로상 시설
 - 민 간 위 탁 : 위례터널 (인력충원 문제로 민간위탁, '15.5월)

• 터널·지하차도 시설물 관리 직영 추진

- 위례터널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'18.5.11부터 직영 전환
- 장지지하차도('16.8월 준공)는 민간위탁 준비 중이었으나 직영 전환으로 추진 중

과제3

안전분야 직영업무 지원강화 (시 주관부서, 투·출기관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안전·생명분야에 대한 직영업무 증가로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 필요
- 인력 및 노후장비 등을 적기에 보강이 안될 경우, 직영으로 전환된 안전업무라도 위험한 환경하에 근무하게 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

□ 추진계획

- 투 출 기 관 : 기관별 안전·생명 관련 2017년 예산을 누락 없이 편성
- 시 주관부서 :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고,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

과제4

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 상황 (공기업담당관)

□ 추진계획 :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배점 상황을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

- 경영평가 ➔ 안전관리분야 목표 강화 및 지표 신설
 - 투자기관(5) : 안전관리분야 목표 상황 건의 (행정자치부 지속 협의)
(예) 사고발생건수(6점) 목표상황 : 3년평균 사고건수의 90%이하 만점 ⇒ 70% 이하 만점 등
 - 출자·출연기관 (16) : 안전·청렴 관리지표 (최대 10점) 신설 추진 (8월중)
(예) 안전점검실태, 안전사고 대책마련 및 예방활동 평가, 사고발생시 경중에 따른 감점 등
- 사장평가 ➔ 핵심가치평가 안전지표 배점 상황 (7월중)
 - 안전역량강화 지표 (비계량 2점) ⇒ (비계량 4점)
 - ▶ 안전한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 노력·성과 (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포함)
 - ▶ 사고발생시 초기대응 및 사후조치의 적정성
- 혁신평가 ➔ 안전분야 지표 강화 방향으로 개선 (7월중)
 - 안전분야 위주의 지표 구성 및 배점 강화(안전관련 점수 40% 차지)
 - 매뉴얼 준수 여부 등 ‘안전사고 대응 능력 평가’ 실시 ⇒ 미준수 시 감점
 - 외주기관 안전관리 강화 지표 신설
 - ▶ 외주기관 종사자 안전교육 여건 조성, 위험상황별 외주기관 종사자 참여 정기 훈련

2

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근절

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로 자체직원의 근무여건과 사업비 등에 비용이 전가됨에 따라 **행동강령에 부당한 특혜 방지를 제도화**

과제5

부당한 전적자 발생 원칙적으로 금지 (투·출기관)

□ 전적자 발생 배경 및 실태

- 당초 2개 기관에서 210명의 전적자가 발생하였으나, 자연퇴직·재고용 등으로 인해 현재 1개 기관(농수산식품공사)에서 19명 근무 중(특혜 없음)

기관	회사형태	최초 전적자 (2008)	현재 전적자 (2016)
농수산식품공사	(민간위탁) → (일반업체) → (자회사)	64명	19명
SH공사	(민간위탁) → 민간위탁 수의계약 종료	146명	없음

※ 지하철 양공사(서울메트로, 도시철도공사) 제외

—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외주화 추진

- ▶ 농수산식품공사 : 2008년 민간위탁, 2013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외주시행
- ▶ SH공사 : 2008년 민간위탁을 통해 외주시행

- 일부 투자·출연기관은 자체 「행동강령」 내 취업제한 관련 내용 존재

— 서울시향 : 퇴직 후 일정기간(3년)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 금지규정

※ 취업자 제한관련 규정

•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

- 해당규정 : **공직자윤리법**(4급 이상 공무원, 국가·지방공기업 임원 등)
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(서울특별시 공무원)
- 주요내용 : 퇴직일부터 3년간,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(기관)의 업무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

□ 전적자 특혜 관련 문제점

- 고임금과 고용기간을 보장받는 전적자로 인해 비용이 전가되는 자체 채용자는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(부족한 안전장비 등) 하에서 근무
 - ※ (사례) 메트로 전적자의 경우 기존 임금의 60~80%를 보전 받는 반면, 자체 채용자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
- 일부 전적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없어, 실제 현장근무 인원은 규정 보다 부족한 상태로 운영됨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안전수칙 준수 여건 미흡

□ 추진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·제7조·제8조
 - 우리시 출자·출연기관은 공공기관, 임직원은 공직자임
 - 공직자의 청렴의무,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사항 및 징계처분 등을 규정
- 각 투자·출자·출연기관별 임직원행동강령, 인사·징계규정 등 내규
 - 각 기관의 인사·징계규정 등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처분토록 규정

□ 추진방향

- 퇴직자의 부당 취업, 퇴직자 재직업체 특혜방지에 관한 표준안 마련
-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은 표준안을 기본으로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을 통한 제도추진 이행력 확보

※ 구의역 사고 관련 대책발표('16.6.30.)

-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업체 재취업 금지, 조건부계약 원칙적 금지
- 전적자에 대한 계약상 특혜행위, 특혜성 계약 및 과다지급 등 금지

□ 추진계획 : (市)행동강령 표준안 마련 → (기관)행동강령 개정

①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제한 및 계약업체 특혜방지에 관한 행동강령 표준안 마련 ('16.7월, 공기업담당관)

내 용	표 준 안
부당한 방법 또는 목적의 재취업 제한	<p>제○조(퇴직 후 취업 제한)</p> <p>① 임직원은 ○○공사(재단) 퇴직 후 취업시 「공직자윤리법」 등 관련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퇴직 후 ○○공사(재단)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○○공사(재단)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전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방지	<p>제○조(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)</p> <p>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○○공사(재단) 퇴직자(이하 '퇴직자'라 한다)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,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행동강령 및 ○○공사(재단)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.</p>

※ 표준안에 대한 법적 적정성 및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제한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기시행(7.22)

② 각 기관의 행동강령 제·개정 ('16.8월, 투·출기관)

○ 부당한 재취업 제한 : 「부당이익의 수수금지」 내 조항신설

예시) 제○조 부당한 재취업금지

○ 전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방지 : 「공정한 직무수행」 내 조항신설

예시) 제○조 퇴직자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

※ 각 기관 행동강령 주요구성 : 대부분 유사 -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(권익위)

제1장(총칙), 제2장(공정한 직무수행), 제3장(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) 제4장(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), 제5장(위반시의 조치), 제6장(보칙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라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

※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(공직유관단체)

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,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·보조를 받는 기관·단체(재출자·재출연을 포함한다),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·단체

5.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·동의·추천·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·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·임명·위촉하는 기관·단체

3. "공직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나.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4. "부패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제7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공직자 행동강령)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.

1.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·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
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·이권개입·알선·청탁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
3.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

4.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,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3

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

투자·출연기관이 자회사나 외주기관에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하도록 ‘산하기관 **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**’을 추진하여 **공정성·투명성 확보**

과제6

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 추진 (재무과, 감사담당관, 투출기관)

□ 특별점검 개요

- 점검기간 : '16.6.22 ~ 6.29
- 점검대상 : 투자·출연기관 19개 기관 (서울메트로, 도시철도공사 제외)
- 점검방법 : 체크리스트 활용 외주 용역 계약서류 778건 전수 조사
 - 과업수행 중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토록 전가 여부
 -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여부
 -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 발생시 발주처 의견 강요 여부

□ 점검결과 및 분석

- ‘갑을관계 혁신대책’에 의한 ‘부당계약 체크리스트’ 점검 결과,
11개 기관의 불공정계약은 615건, 불공정 계약조항은 1,595개

기관	11기관	S 공	H 사	시 공	설 단	농수산 공	사	서 의	울 료	서 원	울 원	SBA	신 보	용 증	세 회	종 관	여 재	성 단	문 재	화 단	디 재	자 단	인 단	
불공정 계약	615건	576		5		7		2		2		1	2		4		2		13		1			
불공정 계약조항	1,595개	1,536		6		13		2		3		1	5		5		6		16		2			

※ 21개 기관 중 10개 기관 제외 : 지하철 양공사(점검 별도), 자원봉사센터, 장학재단, 평생교육진흥원, 디지털재단, 관광마케팅, 50+재단, 복지재단, 교향악단

□ 문제점

- 기존에 사용했던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용역사업 성격에 따라 내용만 일부 수정 사용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

※ 실제 점검 주요 사례

- 안전사고 발생 시 귀책 여부를 고려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전가
- 과업 내용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양자 간 협의 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 발주기관의 의사 강요
-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과업에 대해 비용 정산 없이 업무 지시

- 투자·출연기관의 부당계약 체결 및 부당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

□ 추진방향

-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의 표준 용역계약서 작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**계약방법의 적정성 등 사전심의 기능 강화**
- **부당계약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부당한 위·수탁계약을 사전 예방**

□ 추진계획

① 이미 체결된 계약 중 부당한 계약조건 즉시 시정 조치

- 추진내용 : 특별점검기간 중 적발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부적정 계약조건을 즉시 변경계약하여 시정
- 추진부서 및 추진시기 : **재무과, 투·출기관**
 - 부적정 계약조건 적발사항 시정 조치 요청 기시달 (**재무과**)
 - ※ ‘산하기관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대책 후속조치’ (재무과-33221, '16.7.6.)
 - **부적정 계약조건 변경계약 조치완료 및 결과 통보 : '16.7.29.까지 (투·출기관)**

② 부당(갑질)계약 조건 10개 항목 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 명문화

○ 추진내용

1) 「재무·회계규정」을 개정하여 ‘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 사용 금지’와
관련 세부항목 및 준수 의무를 명시

– 산하기관별 ‘발주부서’에서 1차 점검 → ‘계약부서’에서 2차 점검 후 계약체결

2) 「징계 규정」을 개정하여 부당한 계약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

– 1회 적발시 경고, 2회 적발시 징계, 3회 적발시 배제 징계

– 중대한 부당행위 확인시 1회 적발에도 바로 배제 징계

○ 추진부서 및 추진시기 : 재무과, 투·출기관

– 재무회계규정, 징계규정 등 내부규정 개정 : '16. 8월까지 (투·출기관)

–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의무 시행 : '16. 8. 1.부터 (투·출기관)

※ ‘부당계약 체크리스트’를 투·출기관에 기통보

→ ‘산하기관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대책 후속조치’ (재무과-33221, '16.7.6.)

※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

- ① 과업지시서, 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 사용
- ②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산하기관 의견 강요
- ③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협의 제한
- ④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
- ⑤ 계약기간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
- ⑥ 포괄적,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
- ⑦ ‘그 밖에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사항’ 등 포괄적 과업지시
- ⑧ 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
- ⑨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 부담
- ⑩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비공개

③ 부당계약 상시 감시 체계 구축

○ 추진내용

- 1) '서울계약마당시스템'을 활용 입찰공고를 매일 점검 및 시정조치 통보
 - 안정화 될 때까지 과업지시, 시방서, 특수조건 등 점검
 - 반복 적발시 공기업 평가에 반영
 - ▶ 산하기관 기관장평가, 경영평가 공통지표에 부당계약 지적건수 반영
- 2) 입찰공고문에 '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' 홍보로 부당계약 사전 예방
 - 입찰공고문 하단에 「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」 신고접수 절차 등 이용방법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적극 활용 유도

○ 추진부서 및 추진시기

- '서울계약마당시스템' 점검 및 시정조치 : '16. 8. 1.부터 (재무과)
- 입찰공문 하단 '원순씨 핫라인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'
신고 접수 안내 문구 삽입 : '16. 8. 1.부터 (투·출기관)
- ※ 부당행위 신고센터 홍보문안 및 방법 기 통보
 - '산하기관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대책 후속조치' (재무과-33221, '16.7.6.)

④ 「원순씨 핫라인」을 통한 부당행위 신고 창구 운영

- 「원순씨 핫라인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」를 산하기관까지 확대 운영
- 위탁업체의 부당계약 및 부당행위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시정조치
 - 계약서 및 계약 이행 부당행위에 대해 무기명 온라인 신고 → 감사담당관 조사
 - 반복 적발시 회계분야 특별감사 실시하고 공기업 성과평가에 반영
 - ▶ 산하기관 기관장평가, 경영평가 공통지표에 부당계약 지적건수 반영
- 추진 부서 및 추진시기
 -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조사 : '16. 8. 1.부터 (감사담당관)

⑤ 안전 관련 용역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

○ 추진내용

1) 분야별 용역계약 성격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서울시에서 제작

–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계약전문 변호사 검토

2) 작성된 표준계약서는 기관별·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 사용

– 기관별 법률자문 요청 시 시에서 검토 이행

○ 추진부서 및 추진시기

–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: '16.8월중 (재무과, 협조 : 법률지원담당관)

– 표준계약서 기관별·사업별 사용 : '16.8월중 (투·출기관)

※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노동차별 해소 (일자리노동국)

산하기관의 지속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통해 고용의 안정을 이루고, 사람존중·노동존중 서울을 구현

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

- 「시설관리공단」 : 수도권계량기 검침원 및 교체원 총427명 직접 고용
 - 총 427명 : 검침원 353명, 교체원 74명
 - 5.3 시의회 동의 → 6.27 정관개정 → 7.14 인사위 의결 → 7.22 업무개시
- 「서울의료원」 : 시설 및 경비 등 72명 정규직화
 - 총 72명 : 시설 36, 경비 18, 기타 18
 - 추진일정 : 2017. 1. 1자 전환
- 「사회서비스재단」 : 돌봄분야 종사자 직접 고용을 위해 재단 설립 추진중
 - 재가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 민간업체들의 경쟁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안전성이 낮아 서비스의 질 한계
 - 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영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 및 복지서비스의 질향상 도모

정규직 전환자 차별시정

- 정규직전환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발표 예정(노동혁신대책, 8월중)
 - 상생의 노사관계, 차별 없는 인사·복리후생, 정당한 노동대가, 작업자 안전 등

산하기관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

- 단순노무용역 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으로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을 계약지침에 반영('16.11. 이후 계약하는 신규사업)

V 행정 사항

「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」 통보

: '16. 7. 29.(금)까지 (공기업담당관 → 시 주관부서, 투·출기관)

공사·공단(5)		출자·출연기관(16)			
투출기관	시 주관부서	투출기관	시 주관부서	투출기관	시 주관부서
서울메트로	교통정책과	서울의료원	보건의료정책과	서울시립교향악단	문화정책과
		서울연구원	조직담당관	서울디자인재단	디자인정책과
도시철도공사	교통정책과	서울산업진흥원	경제정책과	서울시자원봉사센터	자치행정과
		서울신용보증재단	소상공인지원과	서울 장학 재 단	교육정책담당관
시설공단	보도환경개선과	세종문화회관	문화정책과	서울평생교육진흥원	평생교육담당관
		서울여성가족재단	여성정책담당관	5 0 + 재 단	인생이모작지원과
농수산식품공사	도시농업과	서울복지재단	복지정책과	디지털재단	디지털산업과
		서울문화재단	문화정책과	서울관광마케팅(주)	관광정책과

투자·출연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: '16. 8. 3.(수)까지

- 제출기관 : 투자·출연기관 → 공기업담당관
- 제출내용 : 종합계획 관련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 등

종합계획 세부실행과제별 추진실적 제출 : '16. 8. 31.(수)까지

- 실적기준 : '16. 8. 31. 기준
- 제출기관 : 투자·출연기관, 재무과, 감사담당관 → 공기업담당관
- 제출내용 : 세부추진실적, 부진시 부진사유 등

□ 소관 부서 및 추진일정

연번	세부실행과제	추진부서	추진기한
	6대 핵심과제, 13개 세부실행과제		
1.	외주사업 의사결정 절차 강화		
	1-1. 안전분야 외주사업 이사회 의결 의무화	투 출 기 관	'16.8.31.
	1-2. 비안전분야 외주사업 결재권자 상향	투 출 기 관	"
2.	안전분야 외주사업 직영 전환		
	2-1. 전용도로 VMS 정비·보수 사업	시 설 관 리 공 단	'17.1.1.
	2-2. 환자 이송 사업	서 울 연 구 원	'17.3.25.
3.	안전분야 직영업무 지원강화		
	3-1. 안전·생명 분야에 대한 예산 등 지원 강화	투 출 기 관	'16.10월중
4.	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 상향		
	4-1.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배점 상향을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	공 기 업 담 당 관	'16.8.31.
5.	부당한 전직자 채용 원칙적으로 금지		
	5-1.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제한 및 계약업체 특혜방지에 관한 표준안 작성	공 기 업 담 당 관	'16.7.31.
	5-2. 각 기관의 행동강령 제·개정	투 출 기 관	'16.8.31.
6.	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 추진		
	6-1. 부당한 계약조건 즉시 시정 조치	재 무 과 투 출 기 관	'16.7.29.
	6-2. 1)부당(갑질)계약 조건 10개 항목 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 명문화	투 출 기 관	'16.8.31.
	2)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통보	재 무 과	'16.7.6.
	3)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의무 시행	투 출 기 관	'16.8.1~
	6-3 1)'서울계약마당시스템' 점검	재 무 과	"
	2)입찰공문 하단에 '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' 신고 접수 안내 문구 삽입	투 출 기 관	"
	6-4. 원순씨 핫라인 부당행위 신고 창구 운영	감 사 담 당 관	"
	6-5. 안전 관련 용역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	재 무 과	'16.8월중
	안전 관련 용역 표준계약서 사용	투 출 기 관	"

사업명							
부서명	발주	작성자	발주	연락처	발주		
	계약		계약		계약		
제출일자		2016.					

연번	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	해당유무	
		발주	계약
1	과업지시서,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(甲乙)용어 대신 산하 기관을 '발주부서'로 계약업체를 '계약상대자'로 표기했는가?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2	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,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?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3	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(물량증감, 물가상승 등) 계약 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?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4	과업지시서,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?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5	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?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6	포괄적·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?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7	과업 내용에 '그 밖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'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?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8	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?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9	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?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10	(협상계약)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(평가점수, 평가위원 명단)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?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	Y/N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체크리스트 각 항목별 사례 및 수정안은 하단 <참고자료>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<참고자료> : 체크리스트 항목별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- ① 과업지시서,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(甲乙)용어 대신 서울시를 ‘발주부서’로 계약업체를 ‘계약상대자’로 표기했는가?

(항목1)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<사례>

- 그 외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“갑”, “을” 이 협의하여 결정하며

<수정안>

- 그 외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“**발주기관**”, “**계약상대자**” 가 협의하여 결정하며

- ②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,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?

(항목2)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<사례>

-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**우리시 의견에 따른다.**
- 과업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**서울시의 해석이 우선한다.**
- 위와 관련 발주자의 조치에 대해 업체는 **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**
- 현장 여건상 경미한 규격변경이 필요하여 본부에서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**이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.**

<수정안>

-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, **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**

- ③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(물량증감, 물가상승 등)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?

(항목3)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<사례>

- 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량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**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**
- 업무 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이 있을 경우, 서울시 방침에 따라 과업을 조정하며 **경미한 사항은 정산하지 아니한다.**

<수정안>

-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**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**

④ 과업지시서,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?

(항목4)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〈사례〉

-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자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~
- 본 공사 시행중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.
-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다.

〈수정안〉

-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**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.**

⑤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?

(항목5)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〈사례〉

-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 필요시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이 종료된 이후 정부정책의 변동에 따른 계획 변경시 발주부서에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.

〈수정안〉

- 본 과업완료 후에도 **경미한 추가작업**이 필요한 경우 **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.**

⑥ 포괄적·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?

(항목6)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〈사례〉

- 계약 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**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**한다.

〈수정안〉

- **정당한 이유 없이**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**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**할 수 있다.

⑦ 과업 내용에 ‘그 밖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’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?

(항목7)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<사례>

-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, 제안요청서,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른다.
-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,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
<수정안>

-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, 제안요청서,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,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⑧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?

(항목8)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<사례>

-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수행업체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업체 부담으로 한다.
- 본 사업시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민·형사상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.

<수정안>

-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⑨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?

(항목9)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〈사례〉

- 발주처로부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시 개최되는 상임·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비용은 '수급자'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.
-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.

〈수정안〉

- 해당문구 삭제

⑩ (협상계약)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(평가점수, 평가위원 명단)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?

(항목10)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

〈사례〉

-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.

〈수정안〉

- 해당문구 삭제